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6. 6. 14. (화) 10:00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덕환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충청북도교육감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2016년 5월 31일

○ 회부일자: 2016년 6월 1일

3. 제안이유

시·도의회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두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335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됨에 따라 도의회 사무처를 정원관리 단위기관으로 정하고, 존속기한이 도래한 한시정원을 삭제하며, 현행 조례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충청북도의회 사무처 단위기관 신설 및 정원 조정(안 제2조, 별표3)

1) 충청북도의회 사무처 총정원: +7명(일반직 4급 1명 포함)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총정원: 2,914명 → 2,907명(△7명)

나. 한시적으로 책정된 “위 프로젝트 사업 전문상담사” 정원의 존속
기한 도래에 따른 정원 삭제

1) 교육행정 8급: 17명(안 별표 4)

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보임직급에
맞게 직급 조정(안 별표3): 3·4급(△4) → 3급(+4)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5. 12. 23.시행)됨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사무처’를 정원관리 단위기관으로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존속기한이 도래한 한시정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 안 제2조에서는 정원 책정 단위로 ‘충청북도의회 사무처’를 신설하여 일반직 4급 1명등 7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본청 정원 7명을 감원 하였음.
- 안 제4조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국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보임직급에 맞게 3·4급 정원 4명을 감원하고, 3급 정원 4명을 증원 하는 것이며,
- 안 5조는 한시적으로 책정된 ‘위 프로젝트 사업 전문 상담사’ 정원의 존속기한이 2016년 6월 30일자로 도래되어 지방공무원의 한시정원 17명을 삭제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